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93
----------	------

제출년월일 : 2004. . .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현행 법령과 불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0조).
- 나.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0인 이상에서 120인 이내로 조정함 (안 제2조).
- 다.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15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제85조 및 제90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8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4. 11. 10. ~ 2004. 11. 2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의7 및 제39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85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10인이상”를 “120인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7인”을 “10인”으로 한다.

제4조중 “2년으로 하되” 다음에 “연임할 수 있으며”를 삽입한다.

제5조제2항중 “시설공사 1팀장이”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담당주사가”로 한다.

제6조 본문중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중 “제38조의7제4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국가계약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하고, 동조제4호중 “국가계약법시행령제 85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으로 하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제3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건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문종화
	담당·팀장 직위·성명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담당자 성명·전화	임정민 (행정 291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자문대상공사) 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 공사는 <u>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u> 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6조 (자문대상공사) ----- ----- <삭 제>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 -----
1. 시행령 <u>제38조의 7제4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단계별 설계자문	1. ----- <u>제21조제3항</u> ----- ----- -----
2. 시행령 <u>제39조제2항</u> 단서 규정에 따라 설계심의에 갈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2. ----- <u>제19조제2항제1호</u> ----- ----- -----
3. <u>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u> 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u>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u> ----- ----- -----
4. <u>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u> 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 적격심의 및 <u>국가 계약법시행규칙 제79조</u> 에 의한 집행 기본계획서 심의	4. <u>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u> ----- ----- <u>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8조</u>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0조 (심의 의결) ① <u>시행령 제39조제2항</u> 단서 규정에 의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10조 (심의 의결) ① ----- <u>제19조제2항</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120인 이내”를 “50인 이상 120인 이하”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10인”을 “11인”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120인</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u>10인</u>을 초과하지 못한다.</p> <p>1~4. (생략)</p>	<p>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u>50인</u>이상 <u>120인</u>이하..... </p> <p>②(원안과 같음)</p> <p>③..... <u>11인</u>.....</p> <p>1~4. (원안과 같음)</p>